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20
----------	-------

발의연월일 : 2026. 9. 11.

발 의 자 : 허성무 · 어기구 · 장철민
안태준 · 이주희 · 이수진
이언주 · 김병주 · 윤준병
조계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과 전략물자의 불법수출 등 산업안보 범죄가 국가 경제와 산업경쟁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기술유출 범죄는 기술과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요구되고, 일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범죄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함. 그러나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부에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소관 부처임에도 기술유출 범죄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아울러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은 국제공조, 산업 및 공급망 영향, 우리나라 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해야 하나, 정책 및 국제공조를 총괄하는 산업부에 수사권이 없어 균형있는 판단 및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 소속 4급부터 9급까지의 관련 국가공무원에게 국가첨단락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에 관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안보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국가 핵심기술과 산업경쟁력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의2. 산업통상부에 근무하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산업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업무 및 「대외무역법」에 따라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제6조에 제2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의2. 제5조제30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의2 및 제37조에 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38조에 규정된 범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0조에 규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 「대외무역법」 중 제53조, 제53조의2, 제55조, 제56조에 규정된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에 관한 범죄와 이와 관련된 같은 법 제57조에 규정된 범죄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산업부 수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 ----- ----- ----- ----- ----- ----- ----- ----- ----- ----- --.
1. ~ 30. (생략)	1. ~ 30. (현행과 같음)
<신설>	30의2. 산업통상부에 근무하며 <u>「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u>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산업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업무 및 「대외무역법」에 따라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31. ~ 53. (생략)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 ~ 27. (생략)

<신설>

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1. ~ 53. (현행과 같음)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

-----.

1. ~ 27. (현행과 같음)

27의2. 제5조제30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제36조, 제36조의2 및 제
37조에 규정된 산업기술의 유
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와 이
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38조에
규정된 범죄, 「국가첨단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0조에
규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 「대외
무역법」 중 제53조, 제53조의
2, 제55조, 제56조에 규정된 전
략물자등의 수출입에 관한 범
죄와 이와 관련된 같은 법 제5
7조에 규정된 범죄

28. ~ 50. (생략)	28. ~ 50. (현행과 같음)
----------------	--------------------